P - 106 - 2016

중대산업사고 조사에 관한 기술지침

2016. 11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####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○ 작성자 : 권 혁 면

○ 개정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임지표

- 제·개정 경과
- 1998년 3월 화학안전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
- 1998년 6월 총괄기준제정위원회 심의
- 2006년 11월 화학안전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
- 2006년 12월 총괄기준제정위원회 심의
- 2012년 7월 총괄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, 법규개정조항 반영)
- 2016년 10월 화학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)
- 관련규격 및 자료
- OECD의 중대산업사고 보고서 양식
- EU의 중대산업사고 보고서 양식(Major Accident Reporting System :MARS)
- 미국 화학공학회 발행 화학사고 조사 가이드라인
- 관련법규·규칙·고시 등
-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(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)
-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- 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(www.kosha.or.kr)의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동 지침 내에서 인용된 관련규격 및 자료, 법규 등에 관하여 최근 개정본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개정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16년 11월 30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### 중대산업사고 조사에 관한 기술지침

#### 1. 목 적

이 지침은 중대산업사고의 예방과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사고에 대한 보고서 (이하 "보고서"라 한다)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법에서 규정한 중대산업사고(이하 "사고"라 한다)를 조사할 때 적용한다.

#### 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 - (가) "중대산업사고"라 함은 유해·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당해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의 누출·화재·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 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말한다.
  - (나) "사고의 근본원인"이라 함은 부적절한 설계, 훈련 또는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사고로 이어지는 단서를 제공하는 가장 기초적인 조건이나 요인을 말한다.
- (2) 그 밖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, 같은 법 시행령, 및 같은 법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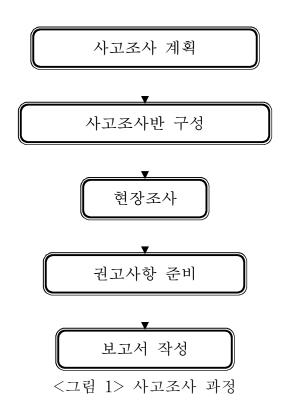
### 4. 사고조사의 목적

사고조사는 사고원인을 찾아 개선대책을 수립함으로써 동종재해 예방에 그 목적이 있다. (1) 사고원인을 분석하여 얻어지는 결과는 다음과 같다.

- (가) 공정설비 및 운전절차 등에 기술상의 합리성 결여
- (나) 안전교육의 미비에 따른 관리자 및 근로자 안전의식 부족
- (다) 위험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한 관리조직이나 제도의 결함
- (2) 사고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대책을 수립한다.
- (가) 기술상의 개선
- (나) 안전교육의 철저
- (다) 관리조직의 개선

### 5. 사고조사 과정

사고조사는 <그림 1>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사고발생시 사고조사계획의 수립부터 보고서의 작성 완료 시까지 일련의 과정을 포함한다.



### 6. 사고조사 계획

사고조사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(1) 사고조사반 구성
- (2) 현장조사 방법
- (3) 권고사항 작성
- (4) 보고서 작성계획

### 7. 사고조사반의 구성

- (1)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조사반을 구성하여 사고조사를 수행한다.
- (2) 사고조사반은 다음 전문가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.
- (가) 사고가 발생된 공정을 잘 알고 있는 공정 담당자
- (나) 사고를 조사하고, 분석할 수 있는 기술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
- (다) 사고 조사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외부 전문가
- (3) 사고조사반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- (가) 사고 원인조사, 피해, 사고교훈 및 동종 재해예방대책을 포함한 [부록] 양식에 따른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
- (나) 조사내용에 대한 기술지원, 자료제공 및 자문 등에 관한 사항
- (다) 기타 조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

#### 8. 현장조사

사고발생 현장에 대한 조사 시 고려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P - 106 - 2016

- (1) 사고조사는 사고현장의 상황과 세밀한 부분이 변형되기 전에 실시
- (2) 사고현장 실태를 분야별로 미세한 부분에서부터 점차 확대하여 조사하고, 이를 연결 조합하여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 확대 재조사
- (3) 사고와 관련된 물적 자료를 철저하게 조사 · 수집하고 필요시 재료시험을 실시
- (4) 사고현장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사진촬영
- (5) 목격자, 책임자 및 피해자 등 관련자의 협조를 얻어 조사

### 9. 권고사항 준비

사고원인이 파악되면 이를 제거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준비하여 재해예방 대책에 포함시켜야 하며, 권고사항 작성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(1) 시스템의 근본원인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한 언급
- (2) 개선사항을 명확히 언급
- (3) 실제적이고 실행할 수 있는 방안 제시
- (4) 사고피해결과 감소방안
- (5) 목표 완료날짜 포함
- (6) 수행책임이 있는 사람 지명
- (7) 변경과정을 관리하고 분석

(8) 권고사항에 대해 다른 조직과 상호 교환성 강조

#### 10. 보고서 작성

[부록]의 양식을 활용한 보고서 작성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(1)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

사고발생 일시와 사고가 발생한 장소를 기재한다.

- (2) 사업장 개요
  - (가) 사업장 설치년도를 포함한 회사연혁 및 생산품을 간단하게 기재한다. 또한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(공단지역, 도시, 시골 등)을 표시한다.
  - (나) PSM 등급 및 대상업종 여부 등을 기재한다.
- (3) 재해자 인적사항

재해자의 성명, 입사일자, 재해정도, 고용형태 등을 기재한다.

(4) 사고 개요

사고개요를 6하 원칙에 따라 요약하여 기술한다.

(5) 사고물질

사고물질의 화학명, 보유량, 상태 및 기타 물리·화학적 특성, 종류를 기재한다.

- (6) 사고발생 설비
  - (가) 사고발생 공정과 설비의 최초운전 및 설비에 대한 장비 보수이력 또는 고장

P - 106 - 2016

이력을 간단히 기술하고, 사고설비 고장부위의 파손정도와 용량, 크기, 설계 및 운전조건 등을 포함한 설비의 사양을 상세히 기재한다.

(나)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[별표 7]에 의한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종류를 기재한다.

#### (7) 사고발생 공정 및 운전상황

- (가) 사고발생 공정의 장치, 밸브 등에 일런번호를 부여한 공정흐름도를 그려서 공 정을 설명한다.
- (나) 사고시의 운전상황 또는 작업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.
- (다) 장치의 상태불량, 고장 또는 점검·수리 등과 같은 사고발생에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 원인에서 사고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뿐만 아니라, 사고의 발생 또는 발견시점부터 사고가 수습되기까지의 경과를 시간에 따라 상세하게 기재한다.
- (라) 사고시의 기상조건을 기재한다.

#### (8) 사고워인

- (가)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점화원 등을 기재하고 사고가 일어난 직접적인 동기를 기술한다.
- (나) 안전작업수칙의 미준수, 설계미흡 및 운전자의 운전절차 미숙지 등 간접적인 원인을 포함하여 기재한다.
- (다) PSM 미준수에 의한 원인을 기재한다.
- (라) 사고원인은 직접원인, 선행원인 및 간접원인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.
- (마) 사고의 근본원인 분석에 의한 사고원인 흐름도(발생원, 조직분류, 설비결함, 대분류, 소분류, 근본원인)를 작성한다.

#### (9) 피해 상황

피해상황을 사업장 내부 및 외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피해에 따른 치료, 복구 등 후속조치 내용도 함께 기재한다.

### (10) 비상대응 실시

P - 106 - 2016

- (가) 사고발생시 내부 비상조치계획에 의하여 진화에 투입된 소화설비 및 인력을 기재한다.
- (나) 사고 진압을 위해 외부로부터 투입된 소방차 및 외부기관을 구체적으로 설명 하고 사고시부터 진압할 때까지의 시간별 활동상황을 기재한다.
- (다) 사고시 외부와의 연락체계 및 통신방법을 기재하고 특히 대피상황에 대하여 기재한다.

#### (11) 사고교훈 및 동종재해 예방대책

- (가) 사고로부터 얻은 교훈을 작성하고, 안전관리 강화, 교육훈련 및 화재 진압설비의 보완 등 향후 개선조치내용과 사고 재발방지대책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며, 사고로 인하여 타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조사하여 기재한다.
- (나) 사고원인에 대응할 수 있고 가장 시급을 요하거나 위험성이 큰 사항에 대한 대책을 중심으로 기재한다. 단, 조사자의 조치내용도 포함시킨다.

#### (12) 첨부자료

사고당시의 사고현장 및 사고발생 설비의 사진 등 특별히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고 보고서와 함께 보관한다.

#### 11. 사고 조사보고서 처리

- (1) 사고 조사보고서에서 지적되고 권고된 개선사항들은 반드시 검토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.
- (2) 개선사항에 대한 검토와 시행은 문서화 시킨다.
- (3) 사고 조사보고서가 작성되면 사고원인, 분석내용, 사고교훈 및 동종재해 예방대책을 모든 작업자에게 알리고 교육을 실시한다.
- (4) 사고 조사보고서는 5년 이상 보관한다.

[부록]

# 중대산업사고 조사보고서

|                         | 작성일자 :       | 년 / 월 .    | / 일 /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작 성 자 :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<br>  전 화 :  |            |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F A X: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I A A: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|
| ◉ 회사명 :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|
| ◉ 주 소: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|
| ◉ 사고발생일시 : 200 년 /      | 월 / 일 /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|
| ◉ 사고발생장소 :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|
| 1. 사업장 개요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|
| ● PSM 등급: ☐ P등급 ☐ S등급 ☐ | ] M+등급 □ M-등 | 급 🗌 미등급    | □ 비대상     |
| ◉ 8대 업종 또는 규정수량 대상 여년   | 부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|
| □ 원유정제 처리업 □ 기타 석유정제    | ∥물 재처리업 □    | 석유화학계 기초   | 화합물 제조업   |
| □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약 | 걸            | 질소, 인산 및 칼 | 리질 비료 제조업 |
| □ 복합비료 제조업 □ 농약 제조업(    | 원제 제조) 🗌     | 화약 및 불꽃제   | 품 제조업     |
| □ 규정수량 이상 취급 □ 기타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|
| ◉ 사업장 근무자수 : 명          | ◉ 생 산 품 :    |            |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|
| ◉ 사업장 설립년도 : 년          | ◉ 공장위치 :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|

### 2. 재해자 인적사항

| 연 번 | 성명 | 주민등록번호 | 직종(직위) | 입사일자 | 동종경력 | 재해정도<br>(사망/부상) |
|-----|----|-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|
| 1   |    |        |  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|
| 2   |    |        |  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|

# 기타사항

| 성 명  |    |          | 소 속(사' | 업장 및 부시 | 1)   |       |     |
|------|----|--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|-------|-----|
| 사고발생 | 일시 | 200 년 월  | 일 요일   | 시 분     | 작업형태 | □ 단독, | □복수 |
| 고용형태 |    | 상용 □ 일용・ | 임시 🗌   | 시간제 🗌 기 | 타( ) | 상해종류  |     |
| 근무형태 |    | 정상 □ 2교대 | □ 3교대  | 대 🗌 기타( | )    | 상해부위  |     |

# 3. 사고개요

| ◉ 누가:   |  |  |  |
|---------|--|--|--|
| ◉ 언제 :  |  |  |  |
| ◉ 어디서 : |  |  |  |
| ◉ 무엇을 : |  |  |  |
| ◉ 어떻게 : |  |  |  |
| ◉ 왜 :   |  |  |  |
|         |  |  |  |

# 4. 사고물질

| • | 화학물질명 :  |
|---|--|
| • | CAS No.:   |
| • | 보 유 량:   |
| • | 상 태:□기상 □액상□고상 □기/액상□액화가스  |
| • | <b>물질의 종류</b> : □ 인화성액체 □ 인화성가스 □ 부식성물질 □ 급성독성물질 □ 폭발성물질 등 □ 물반응성물질 등 □ 산화성액체 등 □ 기타 |
| * | 사고물질의 물리ㆍ화학적 특성  |

# 5. 사고발생설비

| ◉ 사고발생 공정 :   |
|---|
| ◉ 사고발생공정의 최초 운전일  |
| : 200 년 / 월 / 일 /   |
| ◉ 사고발생설비의 최초 운전일  |
| : 200 년 / 월 / 일 /   |
| ◉ 사고발생설비  |
| □ 화학설비  |
|   |
| ① 반응 또는 혼합장치 : □ 반응기 □ 혼합조 □ 용해조 □ 전해조 □ 기타               |
| ② 화학물질 분리장치 : □ 증류탑 □ 흡수탑 □ 추출탑 □ 감압탑 □ 기타                |
| ③ 화학물질 저장 또는 계량 설비 : □ 저장탱크 □ 계량탱크 □ 이동용기 □ 호퍼 □ 사일로 □ 기타 |
| ④ 열교환기류 : □ 응축기 □ 냉각기 □ 가열기 □ 증발기 □ 기타                    |
| ⑤ 점화기를 직접 사용하는 열교환기류 : □ 고로 □ 보일러 □ 가열설비 □ 전기히터 □ 기타      |
| ⑥ 화학제품 가공설비 : □ 캘린더 □ 혼합기 □ 발포기 □ 인쇄기 □ 압출기 □ 기타          |
| □ 화학설비의 부속설비  |
| ① 화학물질 이송 관련 설비 : □ 배관 □ 밸브 □ 관 □ 부속류 □ 호스 □ 기타           |
| ② 자동제어 관련 설비 : □ 온도제어 □ 압력제어 □ 유량제어 □ 액위제어 □ 기타           |
| ③ 비상조치관련설비 : □ 안전밸브 □ 파열판 □ 긴급차단설비 □ 긴급방출설비 □ 기타          |
| ④ 감지경보설비 : □ 가스감지기 □ 화재감지기 □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⑤ 폐가스처리설비 : □ 세정기 □ 응축기 □ 밴트스택 □ 플래어스택                    |
| □ 연소설비(TO, RTO, RCO 등) □ 흡착탑 □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⑥ 분진처리설비 : □ 사이클론 □ 백필터 □ 전기집진기 □ 기타                      |
| ①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의 운전하기 위하여 부속된 전기설비 : □ 수변전설비 □ MCC □ 기타    |
| ⑧ 안전관련설비 : □ 정전기 제거장치 □ 긴급 샤워설비 □ 소화설비 □ 국소배기장치 □ 기타      |
| □ 기타  |
| ① 하역설비 : □ 육상설비 □ 해상설비 □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② 수송설비 : 🗌 보통자동차 🗌 트럭 👚 탱크 🔲 탱크로리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□ 고압용기 □ 크레인 □ 기타   |
| ③ 하수처리설비 : □ 폐수저수조 □ 폐수처리설비 □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④ 기 타 : □ 창고 □ 연구실 □ 사무실 □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※ 사고발생 설비사양   |
|   |
|   |
|   |

# 6. 사고발생 공정 및 운전상황

| ◉ 사고의 형태   |
|--|
| <ul><li>□ 화재 : □ 일반화재 □ 플래쉬화재(Flash fire) □ 액면화재(Pool fire) □ 제트화재(Jet fire)</li></ul>                       |
| □ 폭발 : □ 증기운폭발(VCE) □ 비등액체팽창증기폭발(BLEVE) □ 보일오버(Boilover)   |
| □ 누출   |
| □ 화재 + 폭발  |
| □ 누출 + 화재 + 폭발   |
| □ 누출 + 폭발  |
| □ 중독   |
| □ 질식   |
| □ 도미노효과  |
| □ 기타   |
| ● 사고발생시 운전상황           □ 건설 중 □ 시운전 중 □ 정상운전 중 □ 운전정지(Shutdown) 중           □ 정비보수 중 □ 입·출하 중 □ 운전 중 정비 □ 기타 |
| ※ 공정 및 운전상황을 기술  |

# 7. 사고원인

| •        | 발화원  |
|----------|--|
|          | □ 자연발화 □ 직화 □ 전기스파크 □ 정전기 □ 마찰·충격 □ 기타   |
| •        | <b>설비(물적원인)</b> □ 구매불량 □ 재료불량 □ 제작불량 □ 검사불량 □ 점검 및 보수불량 □ 전기계통의 결함 □ 계장·제어계통의 결함 □ 열화 □ 외부하중의 충격 □ 유틸리티 공급중단 □ 설계오류  |
|          | 사람(인적원인)         경영: □ 지휘명령체계의 미비         관리: □ 작업정보의 제공 및 전달 □ 철저하지 못한 교육훈련         □ 작업기준의 미비         운전: □ 오판단 및 오조작 □ 기량・경험미숙 □ 작업허가         □ 부적절한 비상대응조치 □ 위험물질의 취급 잘못 |
|          | ▶ 자연재해 등         □ 지진       □ 번개       □ 태풍       □ 홍수       □ 해일       □ 기타   |
| [        | 》PSM(공정안전관리) 요소<br>□ 공정안전자료 □ 위험성평가 □ 안전운전지침 □ 설비유지관리 □ 안전작업허가<br>□ 도급업체관리 □ 근로자 교육 □ 가동전점검 □ 변경요소관리<br>□ 비상조치계획 □ 기타  |
| <b>*</b> | 사고원인을 기술   |
|          | 사고원인을 기술 ● 사고가 발생된 원인에 대한 직접원인(불안전한 상태, 불안전한 행동)과 선행원인(안전  |
| •        | 기 사고가 필정된 원인에 대한 역합원인(물인선인 정대, 물인선인 항공)과 선행원인(인선<br>보건교육, 관리적 사항, 작업표준 또는 작업절차, 안전보건수칙, 공정안전관리분  |
|          | 야 등), 간접원인(법 위반사항 등)을 작성   |
|          | 화재나 폭발의 경우 직접원인에 가연물, 점화원, 산소공급원 등 연소의 3요소에  |
|          |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질식이나 중독의 경우 질소, 독성물질 등의 유입 경   |
|          | 로 등에 대해 자세히 작성   |
|          | 》 <b>사고의 근본원인 분석에 의한 사고원인 흐름도</b> (발생원, 조직분류, 설비결함, 대<br>분류. 소분류. 근본원인)를 작성  |

# 8. 피해상황

| •          | 인명피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| □ 근로자 :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| 사망 <u>명</u> , 부상 <u>명</u> , 중독 <u>명</u> |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| □ 인근주민 :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| 사망 <u>명</u> , 부상 <u>명</u> , 중독 <u>명</u> |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| 물적피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| □ 설비 : <u>원</u> □ 원료 및 제품 :             | <u>원</u>       |
|            | □ 인근지역 건물 및 기타 손실 : 원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| 환경오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| □ 지역주민 중독 : <u></u>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| □ 생태계 : □ 동식물 피해 □ 농작물 피해               | □ 토질오염 □ 수질오염  |
|            | □ 대기오염 □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|
| lacksquare | 가동중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| □ 조업중단 설비/공정 :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| □ 중단기간 :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□ 생산량 감소 : 원   |
|            | □ 판매액 감소 :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□ 이익 감소 : 원    |
|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| 인근지역 피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| □ 피해건물 :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| □ 교통두절 : 일/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□ 상수도 공급중단 : 일 |
|            | □ 공공시설 : 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□ 주민대피 : 명     |

P - 106 - 2016 9. 비상대응 ◉ 비상대응 □ 공정비상정지 □ 내부 비상대응조치 □ 외부 비상대응조치 ◉ 진화작업 설비 □ 소방차 : 대 □ 진압에 참여한 외부기관 : 10. 사고교훈 및 동종 재해예방 대책 **11. 첨부자료**: 사진\_\_\_\_매, 도표\_\_\_장, 도면\_\_\_\_장

KOSHA GUIDE